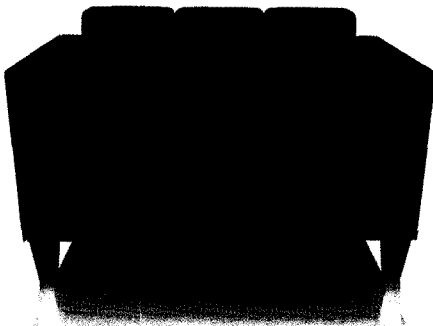


새집증후군 줄이는 가구의 유해물질 지속 관리한다.

현행 안전기준을 계속 시행하기로 하는 안전·품질표시기준 개정고시

“ 가구의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계속 시행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구의 안전품질 표시기준을 지난 3월 28일에 개정고시 하였다. ”



가구는 제조 공정에서 목재 등의 방부처리 및 접착, 도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폼알데하이드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다. 이에 기술표준원은 작년 7월 1일부터 두통,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였다.

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을 각각 병행 적용하여 양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가구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향후 폼알데하이드만 측정할 수 있는 데시케이터법과는 달리 휘발성 유기화합물(VOCs)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챔버법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,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된 유해물질 시험방법 및 기준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.

* 문의 :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(02-509-7246)